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99

발의연월일: 2025. 1. 7.

발 의 자:최형두·김종민·김기현

김성원 · 서천호 · 김예지

엄태영 • 이종욱 • 박상웅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손해배상책임을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 업체로써 사고발생 시 금전손실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확하게 하고,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발주자, 공사업자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제

1항・제3항・제5항・제6항, 제78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중 "타인"을 각각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1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6을 각각 제6호의4부터 제6호의8로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발주자
- 6의3. 제35조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공사 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햀 개 정 안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 | ① -----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관리를 -----해당 공사 목적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 또는_제3자-----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 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 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 <신 설>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 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78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1. ~ 6. (생략) <신 설>

<신 설>

<u>6의2</u>. ~ <u>6의6</u>. (생 략)

7. ~ 9. (생 략)

②·③ (생 략)

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1. ~ 6. (현행과 같음)
- 6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발주자
- 6의3. 제35조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 6의4. ~ 6의8. (현행 제6호의2 부터 제6호의6까지와 같음)
- 7. ~ 9.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